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래정보등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 사항 추가〉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17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거래정보등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 사항 추가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

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거래정보등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 사항 추가

☐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함)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대상 거래 기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u>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u>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사실----- -----.
<신설>	1. <u>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및 제공 대상 거래 기간</u>
<신설>	2. <u>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u>
<신설>	3. <u>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u>

<신 설> ② ~ ⑤ (생 략)	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음.¹⁾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과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

○ 또한, 법 제4조의2²⁾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아울러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①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② 통보가 증거 인

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하거나, ③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고,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해당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함.

□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회사등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그 사유나 경위를 알기 어렵고, 통보가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의인이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 제공 시 명의인에게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대상 거래 기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4조의2제1항제1호는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대상 거래 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명의인은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구체적인 거래 기간을 통보 받음으로써 제공된 정보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인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둘째, 안 제4조의2제1항제3호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그 주요 이유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명의인이 영장 발부 사유 등을 알게 됨으로써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사용 목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의 밀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경찰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과 달리 제출명령·영장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회사등에서 생성·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영장 발부 이유와 관련하여 통보 내용의 구체적 범위를 금융회사등에서 설정할 경우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수사 보안 목적상 통보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회사마다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하여 통보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충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봄.

- 아울러 제출명령·영장을 통한 거래정보등 요구는 수사 초기 혐의

발견,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전체 수사 방향 및 범위 등이 노출될 가능성 및 명의인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공범·중요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실제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셋째, 안 제4조의2제1항제4호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를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거래정보등 제공 후 그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를 유예하는 경우 통보 유예 사실에 대한 명의인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 거래정보등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 유예 기간 및 사유를 통보할 경우 명의인은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정한 사법절차·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명의인에 대한 통보 유예 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거래정보등 제공사실의 통보 유예는 통보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또는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보 유예 제도를 둔 취지가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 등

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측면과 개정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04